

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무자격자와 근무 의사를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

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피고인 A는 무자격자, 피고인 B는 의사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병원 개설 및 운영은 A가 하고,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A는 따로 약 1억 5,7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의사인 B의 관여·가담행위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편취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아 근무 의사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공모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함

2. 근무 의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공범 인정 이유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수입·지출과 관련된 예금 계좌의 개설이나 통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병원 개설·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약 1년 4개월가량 자신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위 공단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③ 피고인 B는 의사로서 20년 이상 일했고, 수사기관에서 '○○전문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렵듯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B의 이러한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자격증분쟁, 면허대여, 2중개설, 환수처분,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